

경기도 지역화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청년배당 등 정책수당을 중심으로

Economic Impact of Alternative Currency Systems in
Gyeonggi Province
:Focusing on Youth Dividend

이상훈 외

GYEONGGI
RESEARCH
INSTITUTE

연구책임 | 이상훈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 | 박누리 (경기연구원 연구원)

정책연구 2018-76

경기도 지역화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청년배당 등 정책수당을 중심으로

- 인 쇄 2018년 12월
- 발 행 2018년 12월
- 발 행 인 이한주
- 발 행 처 경기연구원
- 주 소 (16207)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 전 화 031)250-3114 / 팩스 031)250-3111
- 홈페이지 www.gri.kr

등록번호 제 99-3-6호 © 경기연구원, 2018
I S B N 979-11-8972-512-9 93320



연구요약

□ 연구요약

- 경기도에서 청년배당 지급 조례와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가 제정되어 지역차원의 입법이 이루어졌고, 지역화폐의 도입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임
- 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청년배당과 출산가정에 지급되는 산모건강지원 사업 등, 지역화폐 사업에 대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시(군)별로 분석하고자 하였음
- 청년배당에 의한 경기도 31개 시군의 총 생산유발효과는 1조 1,191억원이 발생할 전망이다이며 연도별로는 2019년 2,867억원, 2020년 2,849억원, 2021년 2,752억원, 그리고 2022년 2,723억원이 발생할 전망이다
 - 청년배당에 의한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총 5,309억원, 취업유발효과는 6,569명임
- 경기도 산모건강비 지원 사업의 경우 31개 시군의 생산유발효과는 1,819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918억원, 그리고 취업유발효과는 1,292명으로 추정됨
- 경기도 지역화폐로서 청년배당과 산모건강지원비에 의한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결과 생산유발효과는 총 1조 3,010억원으로 추산되며 부가가치유발효과는 6,227억원, 그리고 취업유발효과는 7,861명으로 추정됨
-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청년배당과 산모건강 지원사업은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 문제는, 인구규모가 큰 지역에 혜택이 크고 규모가 작은 낙후 지역에서 혜택이 한정된 문제로서 빈익빈 부익부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마련해야할 것임
- 또한, 청년배당과 산모건강지원 등 사업이 구체적으로 시행 완료되는 첫 번째 연도인 2019년 이후에 보다 정밀한 자료를 근거로 최종수요를 판단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음

-
- 지역화폐 관련, 지역내 가맹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파급효과를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더욱이 시군과 경기도 예산의 매칭결과에 따라 파급효과 분석은 달라질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지역화폐 사업의 추진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시군단위별로 구체적으로 추산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임

키워드 지역화폐, 지역경제 파급효과,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차 례

■ 연구요약

■ 제1장 서론 / 3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 2. 연구의 내용 및 흐름 4

■ 제2장 지역화폐의 개념 및 현황분석 / 9

- 1. 선행연구의 검토 9
 - 1) 경제적가치 측면 9
 - 2) 사회적가치 측면 10
- 2. 지역화폐의 개념 및 유형 12
 - 1) 개념 12
 - 2) 유형 12
 - 3) 특징 13
- 3. 경기도 지역화폐 관련 제도 14

■ 제3장 지역화폐의 시군별 배당 추정 / 21

- 1. 청년배당의 시군별 배당 추정 21
 - 1) 경기도 청년배당 실시계획 21
 - 2) 시군별 청년배당의 최종수요 23
- 2. 산모건강지원 사업의 시군별 할당액 추정 42
 - 1) 경기도 산모건강지원 사업 실시계획 42
 - 2) 시군별 산모건강지원 사업의 최종수요 44

■ 제4장 지역화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 47

- 1. 청년배당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47
 - 1) 투입산출모형(Input-Output Model) 개념 47
 - 2) 투입산출모형(Input-Output Model) 구조 48

3) 시군별 지역경제 파급효과	50
2. 경기도 산모건강지원 사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55
3. 지역화폐 도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종합)	57

■ 제5장 요약 및 결론 / 61

1. 연구결과 요약	63
2. 결론	64

■ 참고문헌 / 65

■ Abstract / 80

■ 표차례

<표 3-1> 시군별 청년배당 배정액 추정	22
<표 3-2> 수원시 청년배당 배정액 추정	23
<표 3-3> 성남시 청년배당 배정액 추정	24
<표 3-4> 부천시 청년배당 배정액 추정	25
<표 3-5> 안양시 청년배당 배정액 추정	26
<표 3-6> 안산시 청년배당 배정액 추정	26
<표 3-7> 용인시 청년배당 배정액 추정	27
<표 3-8> 평택시 청년배당 배정액 추정	28
<표 3-9> 광명시 청년배당 배정액 추정	28
<표 3-10> 시흥시 청년배당 배정액 추정	29
<표 3-11> 군포시 청년배당 배정액 추정	29
<표 3-12> 화성시 청년배당 배정액 추정	30
<표 3-13> 이천시 청년배당 배정액 추정	31
<표 3-14> 김포시 청년배당 배정액 추정	31
<표 3-15> 광주시 청년배당 배정액 추정	32
<표 3-16> 안성시 청년배당 배정액 추정	32
<표 3-17> 하남시 청년배당 배정액 추정	33

<표 3-18> 의왕시 청년배당 배정액 추정	33
<표 3-19> 오산시 청년배당 배정액 추정	34
<표 3-20> 과천시 청년배당 배정액 추정	35
<표 3-21> 여주시 청년배당 배정액 추정	35
<표 3-22> 양평군 청년배당 배정액 추정	36
<표 3-23> 고양시 청년배당 배정액 추정	36
<표 3-24> 의정부시 청년배당 배정액 추정	37
<표 3-25> 남양주시 청년배당 배정액 추정	38
<표 3-26> 파주시 청년배당 배정액 추정	38
<표 3-27> 구리시 청년배당 배정액 추정	39
<표 3-28> 포천시 청년배당 배정액 추정	39
<표 3-29> 양주시 청년배당 배정액 추정	40
<표 3-30> 동두천시 청년배당 배정액 추정	41
<표 3-31> 가평군 청년배당 배정액 추정	41
<표 3-32> 연천군 청년배당 배정액 추정	42
<표 3-33> 시군별 산모건강지원 사업비 배정 추정	43
<표 4-1> 청년배당의 시군별 생산유발효과	52
<표 4-2> 청년배당의 시군별 부가가치 유발효과	53
<표 4-3> 청년배당의 시군별 취업유발효과	54
<표 4-4> 산모건강지원사업의 시군별 파급효과(2019~2022)	56
<표 4-5> 지역화폐도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종합)	58

제 1 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흐름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 경기도에서 청년배당 지급 조례와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가 제정되어 지역차원의 입법이 이루어졌고 지역화폐의 도입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임
 - 경기도의 여론조사(2018. 9. 8) 결과 도민의 59%가 지역화폐의 도입에 대해 ‘찬성’하였고, 반대의 의견은 33%인 것으로 조사됨
- 경기도가 31개 시·군 전역으로 지역화폐 도입·확대를 통해 소상공인 실질적 매출증대 및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은 지역내 거주 만24세 청년(68.7만 명)에게 지급되는 것으로서 시(군)지역화폐 추진사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사전에 분석하고 사업계획을 추진할 필요성 대두
 - 1인당 연 100만원(분기 25만원) 규모로, 청년배당(도비 60%, 시군비 40%)이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될 경우의 해당지역에 대한 파급효과를 파악하여 도비 및 시군비 매칭에 따른 사업추진의 당위성 확보
 - 2019년 1,760억원, '20년 1,749억원, '21년 1,691억원, '22년 1,672억원 사업추진에 따른 해당지역의 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취업유발효과 추정
- 경기도내 출산가정에 지급되는 산모건강지원 사업은 2019년 대상 인원이 8만4천명으로 1인당 5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역화폐 사업에 대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한 실정임
 - (청년배당) 17만 명, 1인당 연 100만원, 2019년 연 1,790억원
 - (산모건강지원) 84천 명, 1인당 50만원, 4년간 연 423억원

2)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청년배당과 출산가정에 지급되는 산모건강지원 사업 등, 지역화폐 사업에 대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시(군)별로 분석하고자 함
 - (청년배당) 17만 명, 1인당 연 100만원, 2019년 연 1,790억
 - (산모건강지원) 84천 명, 1인당 50만원, 연 423억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청년배당의 연도별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해당 시(군)별로 추산하여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를 파악하고자 함
- 또한,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지급되는 산모건강지원(84,000명)에 대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시(군)별로 추산하여 사업추진 자료로 활용할 예정임

2. 연구의 내용 및 흐름

1) 연구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경기도 31개 시·군
- 시간적 범위 : 2019 ~ 2022년

2) 연구방법

-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지역 산업연관분석표(Input/output)를 작성
-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경기지역 시군단위 지역산업연관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지역경제파급효과를 분석함
- 시군별로 해당사업의 배당액을 추정하여 지역화폐의 최종수요를 판단하고, 지역단위로 작성된 산업연관표를 활용, 해당 시군의 최종수요를 반영한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를 추정

3) 선행연구 현황 및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과제명 : 고향사랑상품권의 경제적 효과 분석 및 제도화 방안 •연구자 : 이병기 외(2017) •연구목적 : 상품권의 경제적 효과분석에 대한 표준 모델과 분석방법론을 도출	•부가가치 창출효과 추정 •설문조사와 사례분석	•내부형은 상품권 발행에 다른 소상공인 1인당 추가 소득 증가율이 2.13%로 분석 •외부형은 외지인의 지역내 추가 매출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고 지역내 지출이 3.75배(22.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 •통합형은 예산(0.44억원) 대비 부가가치가 15.9배(6.98억원)로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
	2 •과제명 : 경기도 지역화폐 활용방안 연구 •연구자 : 최준규 외(2016) •연구목적 : 지역화폐의 사례 분석과 함께 실증적 자료조사를 통한 정책효과 분석	•시뮬레이션 모형 실증분석 •사례분석 · 인식조사 및 외부전문가 자문	•지역화폐는 공동체 형성이라는 점과 경제적 측면에서 상당한 기대효과를 산출하는 것으로 분석 •경기도 차원에서 지역화폐 인식제고를 위한 학습기제가 마련될 필요성
본 연구	•과제명: 경기도 지역화폐 사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연구목적 : 지역화폐 형태로 경기도 거주 만24세 청년(68.7만 명)에게 지급되는 청년배당과 출산가정에 지급되는 산모건강비 사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	•SLQ 방식에 의한 시(군)지역 단위 산업연관분석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산출 •산업생산(GRDP)구조를 고려한 최종수요 판단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등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리적 근거 마련 •지역화폐사업이 지역에 따라 파급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제시
	차별성	•선행연구에서 각 3개 지자체에서 개별로 시행되고 있는 지역화폐의 경제적 부가가치 효과를 발견하였으나, 본 연구는 경기도 31개 시·군의 지역화폐 사업을 시(군)단위로 도출하여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산출 •선행연구에서 고려하지 못한 SLQ 방식에 의한 시(군)지역 단위 산업연관분석을 실시하고, 시(군)단위 지역 산업연관표(I/O Table)를 도출하여 경기도 지역화폐사업의 대상지역별로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를 산출	

4) 주요 연구 추진계획

- 지역화폐 형태인 청년배당의 지역경제 파급효과(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 경기도 산모건강지원 사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구분	2018년 추진계획(안)		
	10	11	12
□ 과업의 내용			
○ 선행연구 검토 및 문헌 고찰			
- 지역화폐의 개념 및 유형			
- 지역화폐의 사례검토 및 현황분석			
○ 데이터 분석 및 결과 산출			
- SLQ 방식에 의한 산업연관분석 실시			
- 지역산업연관표(I/O Table) 도출			
- 데이터 분석 및 해석			
○ 지역경제 파급효과 검정			
○ 보고서 작성			
□ 연구추진방법			
○ 연구위원회(※필수)	○		
○ 자문회의		○	
○ 연구평가심의회(※필수)		○	

5) 기대효과

- 지역화폐 관련 추진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등 일자리 창출(취업유발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리적 근거 마련
- 지역화폐 관련 사업이 지역에 따라 파급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제시

제 2 장 지역화폐의 개념 및 현황분석

1. 선행연구의 검토
2. 지역화폐의 개념 및 유형
3. 경기도 지역화폐 관련 제도

지역화폐의 개념 및 현황분석

1. 선행연구의 검토

1) 경제적가치 측면

□ 순환경제의 제도화

-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7)에서는 상품권을 발행한 56개 지자체 중 3개 대표사례지역에 대해 지역소득증가 효과 분석을 실시함. 상품권 유통규모에 비해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소득증대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분석됨으로써 향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상공인 지원 대책 마련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상품권 판매액당 지역소득 효과는 외부형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내부형의 경우도 지역내 거래순환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됨. 또한 고향사랑 상품권은 대도시나 광역시도 보다는 주민의 지역 애착도와 공동체성이 높은 농·산·어촌이나 지방 소도시의 경우가 그 도입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춘천(외부형)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상품권이 판매됨으로써 외지인의 지역내 추가 매출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 상품권 판매액(6억원)대비 지역내 지출이 3.75배(22.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됨
- 비슷한 맥락에서 상당수 기존연구 역시 지역화폐 및 상품권 등의 대안통화는 지역의 자본유출을 방지함으로써 지역내 구매력과 거래량을 증가시키는 연구결과를 보여줌 (문진수, 2015; 전대욱, 2016; 한성일, 2013)
- 또한 Groppa(2013)은 일반화폐시장 보다 디지털 지역화폐 시스템상에서 더 많은 지출증가가 있다는 것을 모델링을 통해 분석함

2) 사회적가치 측면

□ 커뮤니티 형성

- 지역화폐 사용을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지역 사람들이 심리적 요구 사항(예 : 인식, 소속감, 자부심 등)을 충족 할 가능성이 높아짐(Ryan Collins et al, 2008; Seyfang, 2010)
-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사회적 목적은 사회적가치 측면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증진시키고 지역 사람들이 서로 신뢰와 사회적 자본을 구축하도록 하는 이웃 지원 활동임(Cahn, 2000; Collom, 2008). 특히, 지역 사회가 파편화되고 지역 신뢰 관계가 붕괴되었을 때 그들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형성 하는데 도움이 됨(Seyfang & Smith, 2002).
- 최준규 외 2인(2016)은 국내외 지역화폐 활용사례를 검토하고 시스템 다이내믹스(SD)모델 분석을 실시함. 과천 품앗이 공동체와 일반인 대상으로 가상적인 지역화폐 거래량과 거래의 부가가치 시뮬레이션을 분석한 결과, 과천 품앗이 공동체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일반인 대상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남. 이는 과천 공동체가 상대적으로 더 끈끈한 공동체성에 기인하여 지역화폐 시스템을 운용하고 지역 내 거래를 활성화 시키고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고 볼 수 있음.
- 풀뿌리 생태 지역화 운동(Grassroot Currencies)은 경제적 가치의 지역 순환 회로를 구축하고 부의 누출을 막음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현지화를 촉진하기 때문에 현지 통화를 지속 가능성의 주요 도구로 인용하는 경우가 많음(Douthwaite, 1996).

□ 환경보호 및 생태계 가치 형성

- 일부 통화는 재활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보람 있는 시민, 또는 보다 지속 가능한 제품을 구매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환경 친화적 행동을 가능하게 함(Holdsworth & Boyle, 2004).
 -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사용되는 'NU 스마트카드'는 대중교통수단 이용, 에너지 효율이 높은 장비구입 또는 자전거 구매시에 그린포인트(green points)가 적립되며 이

를 지역에서 사용가능함

- 또한 지역화폐의 잠재적인 긍정적 환경 영향은 다양하게 나타남. 지역화폐 사용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학자들은 재생가능한 환경을 조성한다고 주장함. 보다 지역화된 소비 패턴과 수입 대체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운송에 필요한 에너지를 감소시킴 (Douthwaite, 1996). 자원의 공유를 촉진하고 재사용이 가능한 재화에 대한 중고시장 접근을 가능하게 함(Briceno and Stagl, 2006)

□ 다양한 사회적가치의 혼합

- 이한주 외 1인(2017)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도입에 관한 파급효과를 연구함. 연구자들은 정책입안자들이 기초연금의 일부분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였을 때, 생산·부가가치·취업 유발효과를 분석함. 전체 기초연금 중 일부분을 지역단위 상품권으로 지급할 경우,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모두 자기지역효과가 상승하였고, 타지역효과는 하락함. 결국 지역화폐를 사용할 경우, 중앙화폐 모형보다 자기지역 생산유발효과, 자기지역 부가가치효과, 자기지역 취업효과가 모두 증가함. 이는 지역화폐가 지역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 지역화폐는 재정적으로 배제되거나 공식 고용을 찾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재화와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한 보조 수단을 제공함(Williams et al, 2001)
 - 성남시는 2016년 생활임금(시급 7,000원)을 도입하고 최저임금(시급 6,030원)과 차액은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함
 - 2016년 성남지역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공공부문 근로자 791명이며, 생활임금 차액은 1인당 평균 15만 2천원으로 최저임금에 비해 추가로 월급을 더 받는 것에 해당함
- 2017년도에 성남시가 청년배당금으로 17,745명에게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약 102억 2,300만원을 지급하고 이를 지역 경제내에서 사용하도록 함
 - 청년배당은 2016년 시행하였으며, 수급 자격은 성남시에 3년이상 거주한 연령 24세에 해당하는 청년에게 4회에 걸쳐 25만원씩 총 100만원을 지급하였음
- 성남시 산후조리비는 출산후 산후조리 지원을 목적으로 2016년 1인당 총 50만원을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이를 지역경제 내에서 소비하도록 함
 - 2016년 말 지급유보금 25만원을 지급하였고, 지급형태는 1만원권 상품권 25매를 동

사무소에서 본인에게 지급

2. 지역화폐의 개념 및 유형

1) 개념

☐ 지역화폐(Alternative currency)의 개념

- 한정된 지역, 특정한 조건으로 상품과 서비스로 교환할 수 있는 수단
- 법정화폐를 제외한 화폐
- 지역화폐는 지역내 자원의 순환활용을 통해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
- 지역화폐는 법정화폐에서 교환의 매개기능만을 활용
 - 한정된 특정지역 또는 소규모 공동체 안에서 통용되는 화폐
 - 화폐의 거래를 통해 상품과 서비스를 교환
 - 지역경제 안정화와 활성화를 추구
 - 세계화의 불안정성에 대비를 목적으로 함

2) 유형

☐ 공동체 화폐(Community currency)

- 일정한 지역적 범위 또는 특정한 이해당사자 집단의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위해 통용
 - 일정 지역내에서만 통용되는 화폐를 지역화폐라 칭함

☐ 광역 화폐(Regional currency)

- 큰 광역의 범위에서 통용되는 화폐

- 업종화폐 또는 특정화폐는 특정 산업이나 부문 (예 : 환경, 복지 등) 내에서 결제를 촉진시키기 위한 화폐임

□ 물물교환(Barters)

- 거래나 교환이 이루어지되 국가적인 화폐금융 시스템으로 직결되지 않는 수단
 - 대안화폐의 다른 형태로(예 : LETS; Local Exchange Trading Systems), 신용거래 등으로 볼 수 있음.

3) 특징

□ 감가상각 화폐

- 결제나 거래를 촉진
 - 화폐 본연의 기능인 교환수단으로써 충실함
 - 사용기간 만료 후 청산함(유 담보 형태)
 - 화폐 유통속도를 높일 수 있는 이상적인 방법임
 - 화폐의 규모화에 있어서 딜레마가 존재함(예 : 소규모-경제 활성화, 대규모-관리의 어려움)

□ 시간적 화폐

- 노동(시간)과 화폐(교환수단)의 연계
 - 사용기간 및 현금청산 절차가 없음(무 담보 형태)
 - 인적자원 활용을 최대화 할 수 있는 이상적인 방법임
 - 자원 연계의 효율화가 관건임
 - 화폐 구현방식(온라인, 오프라인)에 따른 장·단점이 존재함

□ 내부거래

- 참여자 간(상품 및) 서비스 교환

- 장부 상 거래(무 담보 형태)
- 나눔(상호부조) 공동체 실현에 이상적인 방법임
- 그룹 구성원 간 상호신뢰 문화가 관건임
- 구매(교환) 물품 및 서비스의 종류가 한정적임

□ 기타화폐

- 화폐 구성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 가능함(예 : 노동화폐, 탄소화폐, 취업수당화폐 등)
- 복합적인 설계 방식이 가능함 (예 : 시간화폐와 상품권 연계)
-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존재할 경우 의사결정 지연 및 충돌 요인이 존재할 가능성 있음

3. 경기도 지역화폐 관련 제도

□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1) 제안이유

- 경기도 지역화폐의 유통기반 조성과 이용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활성화, 소상공인의 소득향상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경기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지역화폐의 유통기반 조성과 이용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활성화, 소상공인의 소득향상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경기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화폐”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인 시·군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하여 발행·매출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교부 또는 제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함
-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의 육성을 위하여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을 활성화하여야 함
- ② 도지사는 지역화폐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③ 도지사는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제4조(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화폐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지역화폐의 발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
- ② 기본계획에는 지역화폐의 발행규모에 관한 사항, 지역화폐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지역화폐의 발행 및 이용 활성화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지역화폐 가맹점 확보에 관한 사항, 지역화폐 이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의 유통확대에 관한 사항, 지역화폐 이용대상 및 제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
-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지역화폐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제6조(사업 및 지원) 도지사는 지역화폐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이를 추진하는 자에게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지역화폐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업,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업, 지역화폐 보급 및 이용에 관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임
- 제7조(지역화폐의 이용 활성화 조치) 도지사는 지역화폐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 지급하는 각종 수당, 시상금, 맞춤형 복지비 및 인센티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음
- 제8조(재정지원 및 신청)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를 발행·유통하는 경우에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하며, 각호의 내용은 발행하려는 지역화폐의 총액, 보조받으려는 금액과 산출 근거, 지역화폐의 이용 확대를 위한 계획,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등임
- 제9조(재정지원의 조건) ① 제8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시·군이 발행하는 지역화폐에는 「경기도 상징물 관리 조례」 별표 3에 따른 경기도 브랜드를 표시하여야 함
- ② 도지사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등을 육성하기 위해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을 한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음
- 제10조(지역화폐 운영의 평가) 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시·군의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함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결과 그 평가결과가 우수한 시·군에 대해

여는 제8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음

- 제11조(지역화폐센터) 도지사는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지역화폐센터를 두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게 할 수 있음. 즉, 지역화폐의 발행 및 유통, 가맹점의 모집, 분쟁의 조정, 지역화폐의 이용 활성화,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임
- 제12조(포상) 도지사는 지역화폐의 보급 및 활성화 지원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음
- 제13조(준용) 교부결정, 교부조건, 시·군 보조금의 기준보조율, 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의 점검, 실적보고, 정산검사 및 감독, 성과평가, 취소된 보조금의 반환 등 그 밖에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함

제 3 장 지역화폐의 시군별 배당 추정

1. 청년배당의 시군별 배당 추정
2. 산모건강지원 사업의 시군별 배당 추정

지역화폐의 시군별 배당 추정

1. 청년배당의 시군별 배당 추정

1) 경기도 청년배당 실시계획

- 경기도 거주 만24세 청년에게 청년배당을 지급할 계획이며 규모는 1인당 연 100만원 (분기별 25만원)이며, 지급형태는 시(군)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할 예정임
 - 지역화폐의 규모는 2019년 1,760억원에서 2020년 1,749억원, 2021년 1,691억원, 2022년 1,672억원으로 계획됨
- 지역화폐 지급 대상은 경기도 거주 만24세 청년으로 68만7천명이며, 2019년도에는 17만6천명, 2020년 17만5천명, 2021년 16만9천명, 2022년 16만7천명이 해당될 것으로 전망
- 지역화폐 형태로 청년배당의 예산규모를 계획하고 있지만, 내용상으로 시군과의 매칭에 의한 사업으로서 정해진 계획과 예산규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집행규모는 다를 전망이다
 - 경기도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청년배당을 실시할 계획이며, 따라서 청년배당의 시군 배정에 의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이러한 예산이 전부 소진되는 것을 전제로 파급효과를 판단할 수밖에 없음
 - 시군별로 정해질 실제 배당액은 본 사업이 2019년 추진되고 완료된 후에 구체적인 배당액 액수와 규모가 정산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경기도 지역화폐로서 청년배당의 시군별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2019년 이후 2022년까지 4년 기간의 시군별 배당액을 고려하고, 배당액이 모두 집행되는 것을 전제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함

〈표 3-1〉 시군별 청년배당 배정액 추정

(단위 : 명, %, 백만원)

시군	2019년 대상청년수(명)	비중 ¹⁾ (%)	연도별 배정액 ²⁾			
			2019	2020	2021	2022
수원시	18,380	10.5	18,480	18,365	17,741	17,556
성남시	13,157	7.5	13,200	13,118	12,672	12,540
부천시	12,421	7.1	12,496	12,419	11,996	11,871
안양시	8,618	4.9	8,624	8,571	8,279	8,193
안산시	11,332	6.5	11,440	11,369	10,982	10,868
용인시	13,001	7.4	13,024	12,943	12,503	12,373
평택시	6,435	3.7	6,512	6,472	6,252	6,186
광명시	4,332	2.5	4,400	4,373	4,224	4,180
시흥시	6,294	3.6	6,336	6,297	6,083	6,020
군포시	3,859	2.2	3,872	3,848	3,717	3,678
화성시	7,578	4.3	7,568	7,521	7,265	7,190
이천시	2,704	1.6	2,816	2,799	2,703	2,675
김포시	4,317	2.5	4,400	4,373	4,224	4,180
광주시	4,068	1.2	2,112	2,099	2,028	2,006
안성시	2,250	1.3	2,288	2,274	2,196	2,174
하남시	2,695	1.5	2,640	2,624	2,534	2,508
의왕시	2,266	1.3	2,288	2,274	2,196	2,174
오산시	2,664	1.5	2,640	2,624	2,534	2,508
과천시	842	0.9	1,584	1,574	1,521	1,505
여주시	1,311	1.0	1,760	1,749	1,690	1,672
양평군	1,133	0.9	1,584	1,575	1,521	1,505
고양시	15,251	8.7	15,312	15,217	14,700	14,546
의정부	6,367	3.6	6,336	6,297	6,083	6,019
남양주	8,501	4.9	8,624	8,571	8,279	8,193
파주시	5,294	3.0	5,280	5,247	5,069	5,016
구리시	2,923	1.7	2,992	2,973	2,872	2,842
포천시	1,978	1.1	1,936	1,924	1,859	1,839
양주시	2,602	0.8	1,408	1,399	1,352	1,338
동두천	1,200	1.0	1,760	1,749	1,690	1,672
가평군	665	0.7	1,232	1,224	1,183	1,170
연천군	558	0.6	1,056	1,049	1,014	1,003
계	174,996	100.0	176,000	174,900	169,100	167,200

2) 시군별 청년배당의 최종수요

- 지역화폐 형태로 경기도의 청년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고 가맹점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시군별 지역화폐의 최종수요를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사업 추진 이후 확인 할 수 있는 주요 항목임
- 본 연구에서는 청년배당이 지역화폐로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소득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을 고려, 해당 시군의 서비스업 부문의 최종수요로 판단하여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함
 - 즉, 지역화폐 가맹점의 경우 서비스업 부문일 가능성이 크고, 해당 시군에 대한 인구기준의 배당액과 서비스 업종별 종사자수 비중을 고려하여 청년배당액을 추정함
 - 청년배당 지역화폐의 가맹점은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 부문일 것으로 예상

〈표 3-2〉 수원시 청년배당 배정액 추정

(단위 : 명, %, 백만원)

업종	종사자수	비중	연도별 배정액			
			2019	2020	2021	2022
도매및소매업	56,115	0.16	2,957	2,938	2,839	2,809
운수업	19,171	0.06	1,109	1,102	1,064	1,053
음식점및숙박업	44,634	0.13	2,402	2,387	2,306	2,282
정보통신및방송업	6,239	0.02	370	367	355	351
금융및보험업	14,337	0.04	739	735	710	702
부동산및임대업	12,512	0.04	739	735	710	702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46,396	0.13	2,402	2,387	2,306	2,282
사업지원서비스업	32,806	0.09	1,663	1,653	1,597	1,580
공공행정및국방	15,416	0.04	739	735	710	702
교육서비스업	36,692	0.11	2,033	2,020	1,952	1,931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업	34,085	0.1	1,848	1,837	1,774	1,756
문화및기타서비스업	29,510	0.08	1,478	1,469	1,419	1,404
계	347,913	1	18,479	18,365	17,742	17,554

1) 2017년 기준 경기도 연령별 인구통계를 적용한 자료임

2) 해당 시군의 청년인구 비중을 고려하여 배정액을 추산하였음

- 수원시의 경우 서비스 업종 중에서 도소매업의 비중이 가장 크고, 다음은 음식점 및 숙박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의 종사자수 비중이 크게 나타남
 - 수원시의 서비스업 종사자수는 347,913명이며 청년 배당액은 2019년 18,479백만원에서 2022년에는 17,554백만원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 성남시 서비스업의 경우 종사자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은 도매 및 소매업으로 65,305명에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은 정보통신 및 방송업 14%, 음식점 및 숙박업 11%,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1%으로 나타남
- 성남시의 청년배당 배정액은 2019년 13,200백만원, 2020년 13,118백만원, 2021년 12,672백만원, 그리고 2022년 12,540백만원이 배정될 전망이다
 - 성남시의 2017년 기준 서비스업 종사자수는 359,432명이며 청년배당이 이루어질 경우, 지역내 비중이 큰 서비스업 부문에 미치는 영향이 클 전망이다

〈표 3-3〉 성남시 청년배당 배정액 추정

(단위 : 명, %, 백만원)

업종	종사자수	비중	연도별 배정액			
			2019	2020	2021	2022
도매및소매업	65,305	0.18	2,376	2,361	2,281	2,257
운수업	15,982	0.04	528	525	507	502
음식점및숙박업	41,060	0.11	1,452	1,443	1,394	1,379
정보통신및방송업	51,917	0.14	1,848	1,837	1,774	1,756
금융및보험업	11,030	0.05	660	656	634	627
부동산및임대업	15,175	0.04	528	525	507	502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40,195	0.11	1,452	1,443	1,394	1,379
사업지원서비스업	20,803	0.06	792	787	760	752
공공행정및국방	8,669	0.02	264	262	253	251
교육서비스업	32,990	0.09	1,188	1,181	1,140	1,129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업	31,176	0.09	1,188	1,181	1,140	1,129
문화및기타서비스업	25,130	0.07	924	918	887	878
계	359,432	1	13,200	13,118	12,672	12,540

- 부천시의 서비스업 부문 총 종사자수는 197,370명이며 업종별 종사자수 비중은 도매

및 소매업 21.0%, 음식점 및 숙박업 15%,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3%, 교육서비스업 11%,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 11%의 순으로 나타남

〈표 3-4〉 부천시 청년배당 배정액 추정

(단위 : 명, %, 백만원)

업종	종사자수	비중	연도별 배정액			
			2019	2020	2021	2022
도매및소매업	41,628	0.21	2,624	2,608	2,519	2,493
운수업	11,106	0.06	750	745	720	712
음식점및숙박업	28,770	0.15	1,874	1,863	1,799	1,781
정보통신및방송업	3,957	0.02	250	249	240	237
금융및보험업	10,261	0.05	625	621	600	594
부동산및임대업	8,424	0.04	500	497	480	475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6,895	0.03	375	373	360	356
사업지원서비스업	14,219	0.07	875	869	840	831
공공행정및국방	4,797	0.02	250	248	240	237
교육서비스업	20,923	0.11	1,375	1,366	1,320	1,306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업	24,869	0.13	1,624	1,614	1,559	1,543
문화및기타서비스업	21,521	0.11	1,375	1,366	1,320	1,306
계	197,370	1	12,496	12,419	11,996	11,871

- 안양시의 서비스업 부문 총 종사자수는 191,122명이며 업종별 종사자수 비중은 도매 및 소매업 21.0%, 음식점 및 숙박업 12%의 순으로 나타남
- 안양시의 경우도 이전의 도시와 마찬가지로 도소매업 중심의 서비스업 구성을 보이고 있고, 다음은 음식점 및 숙박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이 12%로 상대적으로 비중이 크게 나타남
-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10%로 안양시의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비중을 보이고 있음

〈표 3-5〉 안양시 청년배당 배정액 추정

(단위 : 명, %, 백만원)

업종	종사자수	비중	연도별 배정액			
			2019	2020	2021	2022
도매및소매업	40,648	0.21	1,811	1,800	1,739	1,721
운수업	11,363	0.06	517	514	497	492
음식점및숙박업	23,777	0.12	1,035	1,029	993	983
정보통신및방송업	7,341	0.04	345	343	331	328
금융및보험업	8,537	0.05	431	429	414	410
부동산및임대업	8,476	0.04	345	343	331	328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22,130	0.12	1,035	1,029	993	983
사업지원서비스업	13,690	0.07	604	600	580	574
공공행정및국방	4,649	0.02	172	171	165	164
교육서비스업	18,389	0.1	862	857	827	819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업	16,452	0.09	776	771	745	737
문화및기타서비스업	15,670	0.08	690	686	662	655
계	191,122	1	8,624	8,571	8,279	8,193

○ 안산시에는 도소매업 20%, 음식숙박업 14%,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비중이 12%임

〈표 3-6〉 안산시 청년배당 배정액 추정

(단위 : 명, %, 백만원)

업종	종사자수	비중	연도별 배정액			
			2019	2020	2021	2022
도매및소매업	36,839	0.2	2,290	2,274	2,196	2,174
운수업	12,957	0.07	801	796	769	761
음식점및숙박업	24,964	0.14	1,603	1,592	1,537	1,522
정보통신및방송업	1,638	0.01	114	114	110	109
금융및보험업	6,567	0.04	458	455	439	435
부동산및임대업	6,260	0.04	458	455	439	435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9,574	0.05	572	568	549	543
사업지원서비스업	14,920	0.09	1,030	1,023	988	978
공공행정및국방	6,309	0.04	458	455	439	435
교육서비스업	18,862	0.11	1,259	1,251	1,208	1,195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업	20,274	0.12	1,374	1,364	1,318	1,304
문화및기타서비스업	16,111	0.09	1,030	1,023	988	978
계	175,275	1	11,440	11,369	10,982	10,868

- 용인시는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음식숙박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표 3-7〉 용인시 청년배당 배정액 추정

(단위 : 명, %, 백만원)

업종	종사자수	비중	연도별 배정액			
			2019	2020	2021	2022
도매및소매업	40,969	0.19	2,475	2,459	2,376	2,351
운수업	18,621	0.08	1,042	1,035	1,000	990
음식점및숙박업	28,110	0.12	1,563	1,553	1,500	1,485
정보통신및방송업	4,577	0.02	260	259	250	247
금융및보험업	4,573	0.02	260	259	250	247
부동산및임대업	9,444	0.04	521	518	500	495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26,426	0.11	1,433	1,424	1,375	1,361
사업지원서비스업	10,410	0.04	521	518	500	495
공공행정및국방	6,003	0.03	391	388	375	371
교육서비스업	34,786	0.15	1,954	1,941	1,875	1,856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업	23,903	0.1	1,302	1,294	1,250	1,237
문화및기타서비스업	24,575	0.1	1,302	1,294	1,250	1,237
계	232,397	1	13,024	12,943	12,503	12,373

- 평택시는 도소매업의 비중이 25%로 가장 크고, 다음은 음식점 및 숙박업 14%, 교육 서비스업 12%,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비중이 12%로 나타남
- 광명시의 경우 서비스업 종사자수는 2017년 68,846명이며 종사자수 비중은 도매 및 소매업 비중이 25%로 가장 크게 나타나고 다음은 음식점 및 숙박업 14%, 교육서비스업 12%,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2%의 순으로 나타남
- 시흥시는 서비스업 종사자 91,935명 중에서 도매 및 소매업 종사자 비중이 29%로 높게 나타나고, 다음은 음식점 및 숙박업 16%,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1%의 순임
- 군포시는 서비스업 종사자수 67,990명 중에서 도매 및 소매업 비중이 18%, 운수업 종사자수가 13%, 음식점 및 숙박업 12%의 순으로 나타남
- 화성시의 경우 도매 및 소매업 종사자수가 21%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음식점 및 숙박업 14%, 교육서비스업 11%의 순으로 나타남

〈표 3-8〉 평택시 청년배당 배정액 추정

(단위 : 명, %, 백만원)

업종	종사자수	비중	연도별 배정액			
			2019	2020	2021	2022
도매및소매업	17,470	0.25	1,628	1,618	1,563	1,547
운수업	5,400	0.08	521	518	500	495
음식점및숙박업	9,508	0.14	912	906	875	866
정보통신및방송업	822	0.01	65	65	63	6
금융및보험업	2,485	0.04	260	259	250	247
부동산및임대업	2,850	0.04	260	259	250	247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2,129	0.03	195	194	188	186
사업지원서비스업	2,687	0.04	260	259	250	247
공공행정및국방	2,038	0.03	195	194	188	186
교육서비스업	8,358	0.12	781	777	750	742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업	7,924	0.12	781	777	750	742
문화및기타서비스업	7,175	0.1	651	647	625	619
계	68,846	1	6,512	6,472	6,252	6,186

〈표 3-9〉 광명시 청년배당 배정액 추정

(단위 : 명, %, 백만원)

업종	종사자수	비중	연도별 배정액			
			2019	2020	2021	2022
도매및소매업	17,470	0.25	1,100	1,093	1,056	1,045
운수업	5,400	0.08	352	350	338	334
음식점및숙박업	9,508	0.14	616	612	591	588
정보통신및방송업	822	0.01	44	44	42	42
금융및보험업	2,485	0.04	176	175	169	167
부동산및임대업	2,850	0.04	176	175	169	167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2,129	0.03	132	131	127	125
사업지원서비스업	2,687	0.04	176	175	169	167
공공행정및국방	2,038	0.03	132	131	12	125
교육서비스업	8,358	0.12	528	525	507	502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업	7,924	0.12	528	525	507	502
문화및기타서비스업	7,175	0.1	440	437	422	418
계	68,846	1	4,400	4,373	4,224	4,180

<표 3-10> 시흥시 청년배당 배정액 추정

(단위 : 명, %, 백만원)

업종	종사자수	비중	연도별 배정액			
			2019	2020	2021	2022
도매및소매업	26,704	0.29	1,837	1,826	1,764	1,746
운수업	7,178	0.08	507	504	487	482
음식점및숙박업	14,512	0.16	1,014	1,008	973	963
정보통신및방송업	731	0.01	63	63	61	60
금융및보험업	2,028	0.02	127	126	122	120
부동산및임대업	3,498	0.04	253	252	243	241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2,874	0.03	190	189	182	181
사업지원서비스업	3,257	0.04	253	252	243	241
공공행정및국방	3,129	0.03	190	189	182	181
교육서비스업	9,621	0.1	634	630	608	602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업	10,117	0.11	697	693	669	662
문화및기타서비스업	8,286	0.09	570	567	547	542
계	91,935	1	6,336	6,297	6,083	6,020

<표 3-11> 군포시 청년배당 배정액 추정

(단위 : 명, %, 백만원)

업종	종사자수	비중	연도별 배정액			
			2019	2020	2021	2022
도매및소매업	11,921	0.18	697	693	669	662
운수업	8,593	0.13	503	500	483	478
음식점및숙박업	8,099	0.12	465	462	446	441
정보통신및방송업	1,076	0.02	77	77	74	74
금융및보험업	873	0.01	39	38	37	37
부동산및임대업	2,607	0.04	155	154	149	147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4,402	0.06	232	231	223	221
사업지원서비스업	6,593	0.1	387	385	372	368
공공행정및국방	2,230	0.03	116	115	112	110
교육서비스업	7,980	0.11	426	423	409	405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업	7,083	0.1	387	385	372	368
문화및기타서비스업	6,533	0.1	387	385	372	368
계	67,990	1	3,872	3,848	3,717	3,678

<표 3-12> 화성시 청년배당 배정액 추정

(단위 : 명, %, 백만원)

업종	종사자수	비중	연도별 배정액			
			2019	2020	2021	2022
도매및소매업	36,459	0.21	1,589	1,579	1,526	1,510
운수업	13,041	0.07	530	526	509	503
음식점및숙박업	24,346	0.14	1,060	1,053	1017	1,007
정보통신및방송업	1,225	0.006	45	45	44	43
금융및보험업	2,871	0.02	151	150	145	144
부동산및임대업	7,486	0.04	303	301	291	288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27,776	0.16	1,211	1,203	1,162	1,150
사업지원서비스업	8,235	0.05	378	376	363	360
공공행정및국방	3,727	0.02	151	150	145	144
교육서비스업	19,937	0.11	832	827	799	791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업	14,218	0.08	605	602	581	575
문화및기타서비스업	18,006	0.1	757	752	727	719
계	177,327	1	7,568	7,521	7,265	7,190

- 이천시는 도매 및 소매업의 비중이 17%로 가장 크고 운수업 15%, 음식점 및 숙박업 14%의 순으로 시운수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 김포시는 도소매업의 비중이 27%로 가장 크고 음식점 및 숙박업 16%, 교육서비스업 13%,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1%의 순임
- 광주시의 경우 도매 및 소매업의 비중이 30%로 가장 크고 음식점 및 숙박업 14%, 운수업 13%의 순임
- 안성시는 도매 및 소매업의 비중이 20%로 가장 크고 음식점 및 숙박업 15%, 교육서비스업 14%,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비중이 11%로 나타남
- 하남시는 도매 및 소매업의 비중이 40%로 나타나고 다음은 음식점 및 숙박업이 12%임
- 의왕시는 도매 및 소매업의 비중이 18%로 가장 크고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3%, 운수업 12%, 음식점 및 숙박업 12%의 순으로 나타남

<표 3-13> 이천시 청년배당 배정액 추정

(단위 : 명, %, 백만원)

업종	종사자수	비중	연도별 배정액			
			2019	2020	2021	2022
도매및소매업	11,590	0.17	479	476	460	455
운수업	9,974	0.15	422	420	405	401
음식점및숙박업	9,291	0.14	394	392	378	375
정보통신및방송업	376	0.006	17	17	16	16
금융및보험업	1,929	0.03	84	84	81	80
부동산및임대업	2,326	0.04	113	112	108	107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3,216	0.05	141	140	135	134
사업지원서비스업	6,463	0.1	282	280	270	268
공공행정및국방	2,095	0.03	84	84	81	80
교육서비스업	6,236	0.09	253	252	243	241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업	5,895	0.09	253	252	243	241
문화및기타서비스업	6,917	0.1	282	280	270	268
계	66,308	1	2,816	2,799	2,703	2,675

<표 3-14> 김포시 청년배당 배정액 추정

(단위 : 명, %, 백만원)

업종	종사자수	비중	연도별 배정액			
			2019	2020	2021	2022
도매및소매업	19,077	0.27	1,188	1,181	1,140	1,129
운수업	5,980	0.08	352	350	338	334
음식점및숙박업	11,418	0.16	704	700	676	669
정보통신및방송업	628	0.008	35	35	34	33
금융및보험업	1,999	0.03	132	131	127	125
부동산및임대업	3,167	0.04	176	175	169	167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1,630	0.02	88	87	84	84
사업지원서비스업	1,260	0.02	88	87	84	84
공공행정및국방	2,117	0.03	132	131	127	125
교육서비스업	9,123	0.13	572	568	549	543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업	8,193	0.11	484	481	465	460
문화및기타서비스업	7,025	0.1	440	437	422	418
계	71,617	1	4,400	4,373	4,224	4,180

<표 3-15> 광주시 청년배당 배정액 추정

(단위 : 명, %, 백만원)

업종	종사자수	비중	연도별 배정액			
			2019	2020	2021	2022
도매및소매업	22,575	0.3	634	630	608	602
운수업	9,648	0.13	275	273	264	261
음식점및숙박업	10,248	0.14	296	294	284	281
정보통신및방송업	402	0.005	11	10	10	10
금융및보험업	1,214	0.02	42	42	41	40
부동산및임대업	2,629	0.04	84	84	81	80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1,986	0.03	63	63	61	60
사업지원서비스업	1,059	0.01	21	21	20	20
공공행정및국방	2,458	0.03	63	63	61	60
교육서비스업	6,552	0.09	190	189	183	181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업	7,672	0.1	211	210	203	201
문화및기타서비스업	7,947	0.1	211	210	203	201
계	74,390	1	2,112	2,099	2,028	2,006

<표 3-16> 안성시 청년배당 배정액 추정

(단위 : 명, %, 백만원)

업종	종사자수	비중	연도별 배정액			
			2019	2020	2021	2022
도매및소매업	9,341	0.2	458	455	439	435
운수업	4,367	0.09	206	205	198	196
음식점및숙박업	7,296	0.15	343	341	329	326
정보통신및방송업	615	0.01	23	23	22	22
금융및보험업	1,158	0.02	46	45	44	43
부동산및임대업	1,228	0.03	69	68	66	65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1,246	0.03	69	68	66	65
사업지원서비스업	3,036	0.06	137	136	132	130
공공행정및국방	2,166	0.05	114	114	110	109
교육서비스업	6,740	0.14	320	318	307	304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업	5,371	0.11	252	250	242	239
문화및기타서비스업	5,228	0.1	229	227	220	217
계	47,792	1	2,288	2,274	2,196	2,174

<표 3-17> 하남시 청년배당 배정액 추정

(단위 : 명, %, 백만원)

업종	종사자수	비중	연도별 배정액			
			2019	2020	2021	2022
도매및소매업	20,286	0.4	1,056	1,050	1,014	1,003
운수업	3,955	0.08	211	210	203	201
음식점및숙박업	5,926	0.12	317	315	304	301
정보통신및방송업	816	0.02	53	52	51	50
금융및보험업	824	0.02	53	52	51	50
부동산및임대업	2,349	0.05	132	131	127	125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1,609	0.03	79	79	76	75
사업지원서비스업	1,086	0.02	53	52	51	50
공공행정및국방	1,737	0.04	106	105	101	100
교육서비스업	3,817	0.07	185	184	177	176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업	3,959	0.08	211	210	203	201
문화및기타서비스업	3,887	0.07	185	184	177	176
계	50,251	1	2,640	2,624	2,534	2,508

<표 3-18> 의왕시 청년배당 배정액 추정

(단위 : 명, %, 백만원)

업종	종사자수	비중	연도별 배정액			
			2019	2020	2021	2022
도매및소매업	6,475	0.18	412	409	395	391
운수업	4,305	0.12	275	273	264	261
음식점및숙박업	4,164	0.12	275	273	264	261
정보통신및방송업	1,315	0.04	92	91	88	87
금융및보험업	383	0.01	23	23	22	22
부동산및임대업	1,578	0.04	92	91	88	87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4,492	0.13	297	296	285	283
사업지원서비스업	1,277	0.04	92	91	88	87
공공행정및국방	1,804	0.05	114	114	110	109
교육서비스업	3,485	0.1	229	227	220	217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업	3,571	0.1	229	227	220	217
문화및기타서비스업	2,839	0.07	160	159	154	152
계	35,688	1	2,288	2,274	2,196	2,174

- 오산시는 도매 및 소매업 19%, 음식점 및 숙박업 16%, 교육서비스업 14%,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2%의 순으로 나타남
- 과천시에는 도매 및 소매업 17%, 공공행정 및 국방 16%,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이 13%의 순임
- 여주시는 도매 및 소매업 19%,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 17%, 음식점 및 숙박업 16%,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1%의 순임
- 양평군의 경우 음식점 및 숙박업 24%, 도매 및 소매업 17%,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5%,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 12%, 교육서비스업 11%로 나타남
- 고양시의 경우 도매 및 소매업 24%, 음식점 및 숙박업 14%,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2%, 교육서비스업 11%의 순임

〈표 3-19〉 오산시 청년배당 배정액 추정

(단위 : 명, %, 백만원)

업종	종사자수	비중	연도별 배정액			
			2019	2020	2021	2022
도매및소매업	8,824	0.19	502	499	481	477
운수업	3,382	0.07	185	184	177	176
음식점및숙박업	7,610	0.16	422	420	405	401
정보통신및방송업	293	0.006	16	16	15	15
금융및보험업	1,049	0.02	53	52	51	50
부동산및임대업	1,208	0.03	79	79	76	75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1,224	0.03	79	79	76	75
사업지원서비스업	5,166	0.1	264	262	253	251
공공행정및국방	1,950	0.04	106	105	101	100
교육서비스업	6,526	0.14	370	367	355	351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업	5,685	0.12	317	315	304	301
문화및기타서비스업	4,407	0.09	238	236	228	226
계	47,324	1	2,640	2,624	2,534	2,508

<표 3-20> 과천시 청년배당 배정액 추정

(단위 : 명, %, 백만원)

업종	종사자수	비중	연도별 배정액			
			2019	2020	2021	2022
도매및소매업	5,214	0.17	269	268	259	256
운수업	890	0.03	48	47	46	45
음식점및숙박업	2,302	0.07	111	110	106	105
정보통신및방송업	1,626	0.05	79	79	76	75
금융및보험업	578	0.02	32	31	30	30
부동산및임대업	879	0.03	48	47	46	45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3,923	0.13	206	205	198	196
사업지원서비스업	1,700	0.05	79	79	76	75
공공행정및국방	4,852	0.16	253	252	243	241
교육서비스업	1,908	0.06	95	94	91	90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업	1,412	0.05	79	79	76	75
문화및기타서비스업	5,703	0.18	285	283	274	271
계	30,987	1	1,584	1,574	1,521	1,505

<표 3-21> 여주시 청년배당 배정액 추정

(단위 : 명, %, 백만원)

업종	종사자수	비중	연도별 배정액			
			2019	2020	2021	2022
도매및소매업	5,671	0.19	33	332	321	318
운수업	1,937	0.07	123	122	118	117
음식점및숙박업	4,630	0.16	282	280	270	268
정보통신및방송업	203	0.007	12	12	12	12
금융및보험업	789	0.03	53	52	51	50
부동산및임대업	945	0.03	53	52	51	50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930	0.03	53	52	51	50
사업지원서비스업	1,328	0.04	70	70	68	67
공공행정및국방	2,002	0.07	123	122	118	117
교육서비스업	2,896	0.1	176	175	169	167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업	3,299	0.11	194	192	186	184
문화및기타서비스업	5,138	0.17	299	297	287	284
계	29,768	1	1,760	1,749	1,690	1,672

<표 3-22> 양평군 청년배당 배정액 추정

(단위 : 명, %, 백만원)

업종	종사자수	비중	연도별 배정액			
			2019	2020	2021	2022
도매및소매업	4,130	0.17	269	268	259	256
운수업	1,044	0.04	63	63	61	60
음식점및숙박업	5,881	0.24	380	378	365	361
정보통신및방송업	248	0.01	16	16	15	15
금융및보험업	600	0.02	32	32	30	30
부동산및임대업	863	0.04	63	63	61	60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661	0.03	48	47	46	45
사업지원서비스업	278	0.01	16	16	15	15
공공행정및국방	1,762	0.07	111	110	106	105
교육서비스업	2,627	0.11	174	173	167	166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업	3,573	0.15	238	236	228	226
문화및기타서비스업	2,848	0.12	190	189	183	181
계	24,515	1	1,584	1,575	1,521	1,505

<표 3-23> 고양시 청년배당 배정액 추정

(단위 : 명, %, 백만원)

업종	종사자수	비중	연도별 배정액			
			2019	2020	2021	2022
도매및소매업	60,212	0.24	3,675	3,652	3,528	3,491
운수업	17,566	0.07	1,072	1,065	1,029	1,018
음식점및숙박업	34,408	0.14	2,144	2,130	2,058	2,036
정보통신및방송업	6,025	0.02	306	304	294	291
금융및보험업	8,360	0.03	459	457	441	436
부동산및임대업	13,830	0.05	766	761	735	727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9,241	0.04	612	609	588	582
사업지원서비스업	12,197	0.05	766	761	735	727
공공행정및국방	6,143	0.02	306	304	294	291
교육서비스업	28,797	0.11	1,684	1,674	1,617	1,600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업	31,607	0.12	1,837	1,826	1,764	1,746
문화및기타서비스업	26,434	0.1	1,531	1,522	1,470	1,455
계	254,820	1	15,312	15,217	14,700	14,546

- 의정부시는 도매 및 소매업의 비중이 20%로 가장 크고 음식점 및 숙박업 15%,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4%, 교육서비스업이 11%의 비중을 보임
- 남양주시의 경우 도매 및 소매업이 28%로 가장크고 음식점 및 숙박업 16%, 교육서비스업 13%,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3%의 비중을 보임
- 파주시의 경우 도매 및 소매업이 23%의 비중으로 가장 크고 교육서비스업 11%,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1%의 비중을 보임
- 구리시의 경우 도매 및 소매업이 25%를 차지하여 가장 큰 비중을 보이고 음식점 및 숙박업 15%,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1%의 비중을 차지함
- 포천시의 경우 도매 및 소매업이 25%로 가장 큰 비중을 보이고 음식점 및 숙박업이 20%,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이 12%를, 교육서비스업이 11%를 보임
- 양주시의 경우 도매 및 소매업이 2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음식점 및 숙박업 16%, 교육서비스업 12%,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2%,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이 12%의 비중을 보임

〈표 3-24〉 의정부시 청년배당 배정액 추정

(단위 : 명, %, 백만원)

업종	종사자수	비중	연도별 배정액			
			2019	2020	2021	2022
도매및소매업	19,852	0.2	1,267	1,259	1,217	1,204
운수업	6,377	0.06	380	378	365	361
음식점및숙박업	15,554	0.15	950	945	912	903
정보통신및방송업	1,366	0.01	63	63	61	60
금융및보험업	5,400	0.05	317	315	304	301
부동산및임대업	3,641	0.04	253	252	243	241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3,799	0.04	253	252	243	241
사업지원서비스업	3,221	0.03	190	189	182	181
공공행정및국방	6,016	0.06	380	378	365	361
교육서비스업	11,886	0.11	697	693	669	662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업	14,498	0.14	887	882	852	843
문화및기타서비스업	9,642	0.1	634	630	608	602
계	101,252	1	6,336	6,297	6,083	6,019

<표 3-25> 남양주시 청년배당 배정액 추정

(단위 : 명, %, 백만원)

업종	종사자수	비중	연도별 배정액			
			2019	2020	2021	2022
도매및소매업	31,216	0.28	2,415	2,400	2,318	2,294
운수업	8,778	0.08	690	686	662	655
음식점및숙박업	17,630	0.16	1380	1,371	1,325	1,311
정보통신및방송업	785	0.007	60	60	58	57
금융및보험업	1,970	0.02	172	171	166	164
부동산및임대업	4,790	0.04	345	343	331	328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1,957	0.02	172	171	166	164
사업지원서비스업	1,721	0.02	172	171	166	164
공공행정및국방	3,194	0.03	259	257	248	246
교육서비스업	14,654	0.13	1,121	1,114	1,076	1,065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업	15,275	0.13	1,121	1,114	1,076	1,065
문화및기타서비스업	11,197	0.1	862	857	828	819
계	113,167	1	8,624	8,571	8,279	8,193

<표 3-26> 파주시 청년배당 배정액 추정

(단위 : 명, %, 백만원)

업종	종사자수	비중	연도별 배정액			
			2019	2020	2021	2022
도매및소매업	20,858	0.23	1214	1,207	1,166	1,154
운수업	9,557	0.1	528	525	507	502
음식점및숙박업	14,292	0.16	845	840	811	803
정보통신및방송업	4,035	0.04	211	210	203	201
금융및보험업	2,121	0.02	106	105	101	100
부동산및임대업	3,702	0.04	211	210	203	201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1,639	0.02	106	105	101	100
사업지원서비스업	3,687	0.04	211	210	203	201
공공행정및국방	2,348	0.03	158	157	152	150
교육서비스업	10,147	0.11	581	577	558	552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업	9,623	0.11	581	577	558	552
문화및기타서비스업	9,062	0.1	528	525	507	502
계	91,071	1	5,280	5,247	5,069	5,016

<표 3-27> 구리시 청년배당 배정액 추정

(단위 : 명, %, 백만원)

업종	종사자수	비중	연도별 배정액			
			2019	2020	2021	2022
도매및소매업	13,039	0.25	748	743	718	711
운수업	3,490	0.07	209	208	201	199
음식점및숙박업	8,036	0.15	449	446	431	426
정보통신및방송업	651	0.01	30	30	29	28
금융및보험업	3,466	0.07	209	208	201	199
부동산및임대업	1,962	0.04	120	119	115	114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2,250	0.04	120	119	115	114
사업지원서비스업	2,252	0.04	1120	119	115	114
공공행정및국방	2,003	0.04	1120	119	115	114
교육서비스업	4,747	0.09	269	268	258	256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업	5,854	0.11	329	327	316	313
문화및기타서비스업	4,978	0.09	269	268	258	256
계	52,728	1	2,992	2,973	2,872	2,842

<표 3-28> 포천시 청년배당 배정액 추정

(단위 : 명, %, 백만원)

업종	종사자수	비중	연도별 배정액			
			2019	2020	2021	2022
도매및소매업	11,074	0.25	484	481	465	460
운수업	3,227	0.07	136	135	130	129
음식점및숙박업	8,765	0.2	387	385	372	368
정보통신및방송업	212	0.005	10	10	9	9
금융및보험업	1,525	0.03	58	58	56	55
부동산및임대업	787	0.02	39	38	37	37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855	0.02	39	38	37	37
사업지원서비스업	884	0.02	39	38	37	37
공공행정및국방	1,945	0.04	77	77	74	74
교육서비스업	4,857	0.11	213	212	204	202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업	4,521	0.1	194	192	186	184
문화및기타서비스업	5,085	0.12	232	231	223	221
계	43,737	1	1,936	1,924	1,859	1,839

<표 3-29> 양주시 청년배당 배정액 추정

(단위 : 명, %, 백만원)

업종	종사자수	비중	연도별 배정액			
			2019	2020	2021	2022
도매및소매업	11,177	0.26	366	364	352	348
운수업	3,195	0.08	113	112	108	107
음식점및숙박업	6,806	0.16	225	224	216	214
정보통신및방송업	112	0.002	3	3	3	3
금융및보험업	771	0.02	28	28	27	27
부동산및임대업	1,637	0.04	56	56	54	54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788	0.02	28	28	27	27
사업지원서비스업	1,382	0.03	42	42	41	40
공공행정및국방	1,771	0.04	56	56	54	54
교육서비스업	4,990	0.12	169	168	162	161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업	4,996	0.12	169	168	162	161
문화및기타서비스업	4,954	0.12	169	168	162	161
계	42,579	1	1,408	1,399	1,352	1,338

- 동두천시는 음식점 및 숙박업의 비중이 19%로 가장 크고 다음은 도매 및 소매업 18%, 교육서비스업 11%의 순으로 나타남
- 가평군의 경우 음식점 및 숙박업이 34%로 가장 크게 나타나고 다음은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 15%, 도매 및 소매업 13%,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1%의 순으로 나타남
- 연천군의 경우 도매 및 소매업의 비중이 19%로 가장 크게 나타나고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 12%, 공공행정 및 국방 11%의 순으로 나타남

<표 3-30> 동두천시 청년배당 배정액 추정

(단위 : 명, %, 백만원)

업종	종사자수	비중	연도별 배정액			
			2019	2020	2021	2022
도매및소매업	3,553	0.18	317	315	304	301
운수업	1,399	0.07	123	122	118	117
음식점및숙박업	3,744	0.19	334	332	321	318
정보통신및방송업	211	0.01	18	17	17	17
금융및보험업	885	0.04	70	70	68	67
부동산및임대업	601	0.03	53	52	51	50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187	0.009	16	16	15	15
사업지원서비스업	204	0.01	18	17	17	17
공공행정및국방	1,075	0.05	88	87	85	84
교육서비스업	2,175	0.11	194	192	186	184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업	4,012	0.2	352	350	338	334
문화및기타서비스업	2,067	0.1	176	175	169	167
계	20,113	1	1,760	1,749	1,690	1,672

<표 3-31> 가평군 청년배당 배정액 추정

(단위 : 명, %, 백만원)

업종	종사자수	비중	연도별 배정액			
			2019	2020	2021	2022
도매및소매업	2,690	0.13	160	159	154	152
운수업	694	0.03	37	37	35	35
음식점및숙박업	6,950	0.34	419	416	402	398
정보통신및방송업	150	0.007	9	9	8	8
금융및보험업	414	0.02	25	24	24	23
부동산및임대업	427	0.02	25	24	24	23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470	0.02	25	24	24	23
사업지원서비스업	381	0.02	25	24	24	23
공공행정및국방	1,162	0.06	74	73	71	70
교육서비스업	1,705	0.08	99	98	95	94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업	2,173	0.11	136	135	130	129
문화및기타서비스업	3,041	0.15	185	184	177	176
계	20,257	1	1,232	1,224	1,183	1,170

<표 3-32> 연천군 청년배당 배정액 추정

(단위 : 명, %, 백만원)

업종	종사자수	비중	연도별 배정액			
			2019	2020	2021	2022
도매및소매업	1,807	0.19	201	199	193	191
운수업	404	0.04	42	42	41	40
음식점및숙박업	1,885	0.2	211	210	203	201
정보통신및방송업	87	0.009	10	9	9	9
금융및보험업	375	0.04	42	42	41	40
부동산및임대업	249	0.03	32	31	30	30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196	0.02	21	21	20	20
사업지원서비스업	45	0.004	4	4	4	4
공공행정및국방	1,068	0.11	116	115	112	110
교육서비스업	994	0.1	106	105	101	100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업	1,282	0.1	106	105	101	100
문화및기타서비스업	1,168	0.12	127	126	122	120
계	9,560	1	1,056	1,049	1,014	1,003

2. 산모건강지원 사업의 시군별 할당액 추정

1) 경기도 산모건강지원 사업 실시계획

- 경기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건강지원 사업으로 ‘지역화폐’를 지급할 계획이며 신생아 출생일 기준 1년 이상 경기도 거주한 경우가 해당됨
 - 출생아 1인당 500,000원 지역화폐 지원
 - 지원규모 : 84,600명(90%목표)(도비 50%, 시군비 50%)
 - 지원내용 : 모유수유 용품 구입, 산모·신생아 용품 구입, 산후조리비용
- 경기도 출생아 수는 2017년 94,000명으로 전년대비 11% 감소하였고, 합계출산율은 1.07명으로 나타남. 따라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로 아기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본 사업의 목적임
- 연도별로 2019년 423억원, 2020년 423억원, 2021년 423억원, 2022년 423억원을 지원

〈표 3-33〉 시군별 산모건강지원 사업비 배정 추정

(단위 : 명, %, 억원)

시군	2019년 대상 (명)	비중 ³⁾ (%)	연도별 배정액			
			2019	2020	2021	2022
수원시	10,984	0.096333	40	40	40	40
성남시	7,621.2	0.066841	28	28	28	28
부천시	6,603.8	0.057918	24	24	24	24
안양시	4,534.4	0.039768	17	17	17	17
안산시	5,022	0.044045	19	19	19	19
용인시	9,553.6	0.083788	35	35	35	35
평택시	4,461	0.039125	17	17	17	17
광명시	2,766.4	0.024262	10	10	10	10
시흥시	3,718.2	0.03261	14	14	14	14
군포시	2,480	0.02175	9	9	9	9
화성시	8,889.8	0.077967	33	33	33	33
이천시	2,050.4	0.017983	8	8	8	8
김포시	4,569.2	0.040073	17	17	17	17
광주시	3,576.2	0.031365	13	13	13	13
안성시	1,490.8	0.013075	6	6	6	6
하남시	2,552.6	0.022387	10	10	10	10
의왕시	1,233.4	0.010817	5	5	5	5
오산시	2,457.4	0.021552	9	9	9	9
과천시	375.4	0.003292	1	1	1	1
여주시	778	0.006823	3	3	3	3
양평군	727.8	0.006383	3	3	3	3
고양시	8,069.4	0.070771	30	30	30	30
의정부	3,351.2	0.029391	12	12	12	12
남양주	5,924.4	0.051959	22	22	22	22
파주시	4,335	0.038019	16	16	16	16
구리시	1,651.6	0.014485	6	6	6	6
포천시	1,001.2	0.008781	4	4	4	4
양주시	1,803	0.015813	7	7	7	7
동두천	716	0.00628	3	3	3	3
가평군	363.8	0.003191	1	1	1	1
연천군	359.4	0.003152	1	1	1	1
계	114,020.6	423	423	423	423	423

- 경기도의 0-4세 인구를 고려한 시군별 산모건강지원 사업 배당은 4년 기간 동안 수원시가 가장 큰 160억원 규모이며, 용인시 140억원, 화성시 132억원, 고양시 120억원의 순으로 나타남
- 산모건강지원 사업의 경우 2019년 이후 연간 423억원으로 4년간 동일한 예산이 지급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음

2) 시군별 산모건강지원 사업의 최종수요

- 지역화폐 형태로 경기도의 산모건강지원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고, 지역화폐로서 시군별 지역화폐의 최종수요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관련 산업을 최종수요로 판단함
- 본 연구에서는 산모건강지원 사업이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관련 부문의 최종수요로 판단하여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함

3) 2017년 기준 경기도 0-4세 인구통계를 활용한 자료임

제 4 장

지역화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1. 청년배당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2. 경기도 산모건강지원 사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3. 지역화폐 도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종합)

지역화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1. 청년배당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1) 투입산출모형(Input-Output Model) 개념

- 경기도 청년배당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정량적이고 계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한국은행의 “2010년 국가산업연관표의 연장표(2014)”를 활용하여 시군단위 지역산업연관표를 작성하였음
- 경기도 청년배당 사업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지역화폐가 지급될 시·군별로 투입산출모형을 산출하였고, 이를 통해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를 분석함
- 한 국가의 국민 경제 또는 지역 내에서 재화와 서비스가 생산되고 그 생산과정에서 각 산업은 원재료의 거래관계를 토대로 직·간접으로 연관을 맺게 되는데, 이와 같이 생산 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산업 간의 상호연관관계를 수량적으로 파악하는 분석방법이 산업연관분석(interindustry analysis) 또는 투입산출분석(input-output analysis)임(「산업연관분석해설」, 한국은행, 2007)
 - 산업연관분석은 생산 활동을 통하여 각 산업 간에 이루어지는 원재료 등의 매매거래를 토대로 하게 되는데, 일정 기간(통상 1년) 동안 한 나라에서 생산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산업간 거래관계를 일정한 원칙과 형식에 따라 체계적으로 기록한 종합적인 통계표인 산업연관표의 작성으로부터 출발하게 됨
-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원재료 및 연료 등의 중간투입물과 노동 및 자본 등의 본원적 투입물을 사용하게 되는데, 각 산업부문이 해당 부문의 재화나 서비스 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부문으로부터 구입한 원재료 및 연료 등의 중간투입액을 총 투입액으로 나눈 것을 투입계수라 하고, 노동 등에 대한 본원적 투입물에 대한 대가인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등 부가가치액을 총 투입액으로 나눈 것을 부가가치계수(부가가치율 또는 소득률)이라함

- 이러한 투입계수를 매개로 하는 최종수요에 의한 직·간접적인 생산변동을 생산유발 효과라 하고 이를 계측, 분석하는 것이 산업연관분석의 기본원리임
- 투입계수로부터 생산유발계수표를 도출하고, 생산유발계수표에 산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유발계수표를 도출하며, 도출된 부가가치계수표에 취업계수를 적용하여 취업유발계수표를 도출하여 파급효과를 판단하는 것이 산업연관분석의 전반적인 과정임
 - 또한 생산유발계수표를 이용하여 전방연관효과인 감응도계수와 후방연관효과인 영향력계수를 도출하게 됨

2) 투입산출모형(Input-Output Model) 구조

- 투입산출모형은 비용-편익분석과 승수모형과는 달리 가치중립적이며 가치판단은 종합적인 설명(aggregation specification)에 국한되고, 국민계정과 관련하여 전체 경제에 대한 자료 중에서 질적으로 높은 것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투입산출모형에서는 i 산업에서 j 산업으로의 흐름은 전적으로 j 산업의 총생산에 달려있으며, 이와 같은 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j 산업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1단위 생산하기 위하여 투입되는 i 산업의 제품 또는 서비스의 양을 투입산출계수로 나타내고, 이들 계수들의 집합을 투입산출계수행렬 A 로 표기함

$$a_{ij} = \frac{X_{ij}}{X_j}$$

- j 산업의 생산량은 관련 타산업의 중간 투입재(X_{ij})와 가계부문의 최종수요량(D_j)을 생산량의 합으로 구성됨

$$X_j = a_{1j} X_{1j} + \cdots + a_{nj} X_{nj} + D_j$$

- 즉, 모든 j 에 대하여 이러한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이를 행렬로 나타내면

$$(I - A)X = D$$

○ 결국 각 산업에서 생산하여야 할 생산량은 $(I - A)^{-1}D$ 로 나타낼 수 있음. 여기서 $(I - A)^{-1}$ 을 레온티에프 역행렬(Leontief inverse matrix) 또는 승수행렬(multiplier matrix)라고 하며, D 는 최종수요 벡터임

○ 부가가치는 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고용자가 받게 되는 보수(소득)과 해당기업들의 영업이익, 고정자본감가상각비, 간접세, 보조금 등을 합한 것으로서 투입산출모형에서는 외생적인 투입부문이 됨

○ 생산유발계수(output multiplier)는 어떤 산업부문의 산출물에 대한 최종수요 1단위를 충족하기 위해 직·간접으로 유발된 전체 산업부문의 산출액을 의미함

- 생산유발계수 : $O_j = \sum_{i=1}^n b_{ij}$ 여기서 b_{ij} 는 승수행렬 $(I - A)^{-1}$ 의 원소를 나타냄

- 생산유발계수는 직접효과(direct effects)와 간접효과(indirect effect)의 합으로 구성됨

- 직접효과는 기술계수행렬(technical coefficients matrix)의 해당부문 열의 모든 원소를 합한 값에 최초의 변화단위(initial change) 1을 더한 것이며, 간접효과는 누적적인 간접변화의 합으로 $((I - A)^{-1} - (I + A))$ 행렬에 해당되는 부문의 열의 합으로 계산함

○ 부가가치유발계수는 어떤 산업에 대한 최종수요의 변화가 부가가치에 미치는 효과를 나타냄

- 부가가치유발계수 : $V_j = \sum_{i=1}^n \frac{V_i}{X_i} b_{ij}$ 여기서 V_i 는, i 산업 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고용자가 받게 되는 보수(소득)과 해당기업들의 영업이익, 고정자본 감가상각비, 간접세, 보조금 등을 합한 금액을 총부가가치를 나타냄

- 이러한 부가가치계수 $(\frac{V_i}{X_i})$ 의 대각행렬을 생산유발계수에 곱하여 부가가치유발계수표를 작성하여 산업별 부가가치유발효과를 구함

- 취업유발효과는 어떤 내생부문에서 직접적으로 취업 1단위의 변화로 인해 경제 전체의 총 취업변화를 의미하는데, 한 내생산업 j 의 취업승수 (K_j^L)는 j 산업에 대한 최종수요 1단위의 변화로부터 직·간접으로 유발된 총 취업효과 ($\sum_{i=1}^n \frac{L_i}{X_j} b_{ij}$)로 표현됨. 여기서 L_i 는 i 산업부문의 총취업량을 나타냄

3) 시군별 지역경제 파급효과

(1) 생산유발효과

- 청년배당에 의한 경기도 31개 시군의 생산유발효과는 총 1조 1,191억원이 발생할 전망이다, 연도별로는 2019년 2,867억원, 2020년 2,849억원, 2021년 2,752억원, 그리고 2020년 2,723억원이 발생할 전망이다
-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청년배당에 따른 생산유발효과가 가장 큰 시는 수원시로 2019년~2022년까지 1,040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 청년배당은 해당 시·군의 인구구조에서 해당 연령층이 많은 시군에 대한 배당이 커지는 구조이며 수원시에 이어 고양시는 930억원, 용인시 837억원, 부천시 819억원, 성남시 809억원으로 추산됨
- 청년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연천, 가평, 양평, 양주시 등의 경우 청년배당 규모가 작게 나타나고, 생산유발효과 또한 작게 나타나고 있음
- 결과적으로 청년인구 규모가 큰 도시일 경우 청년배당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들 도시 지역의 생산유발효과가 크게 나타남

(2) 부가가치 유발효과

- 청년배당에 의한 부가가치 유발효과의 경우 31개 시군에서 총 5,309억원이 발생할 것

으로 전망되며, 생산유발효과가 큰 도시지역에서 부가가치유발효과가 크게 나타남

- 부가가치 유발효과의 경우도 생산유발효과와 마찬가지로 인구규모가 큰 도시에서 유발효과가 크게 나타남

(3) 취업유발효과

- 청년배당에 의한 취업유발효과의 경우 31개 시군에서 총 6,569명의 취업유발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며,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도시지역에서 취업유발효과가 크게 나타날 전망이다
- 청년배당의 효과는 도시규모가 크고 인구구조에서 청년의 비중이 큰 지역에 배당액이 크게 할애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표 4-1〉 청년배당의 시군별 생산유발효과

(단위 : 백만원)

시군	연도별 생산유발효과				
	2019	2020	2021	2022	계
수원시	26,644	26,479	25,581	25,310	104,014
성남시	20,722	20,594	19,893	19,686	80,895
부천시	20,980	20,851	20,141	19,931	81,903
안양시	14,308	14,220	13,736	13,593	55,857
안산시	19,849	19,710	19,039	18,842	77,440
용인시	21,439	21,306	20,581	20,368	83,694
평택시	11,966	11,893	11,489	11,367	46,715
광명시	6,763	6,722	6,493	6,425	26,403
시흥시	11,326	11,256	10,874	10,761	44,217
군포시	6,417	6,378	6,160	6,095	25,050
화성시	12,810	12,730	12,297	12,170	50,007
이천시	4,714	4,685	4,525	4,478	18,402
김포시	7,595	7,548	7,291	7,215	29,649
광주시	3,948	3,924	3,791	3,750	15,413
안성시	3,941	3,917	3,783	3,745	15,386
하남시	5,335	5,303	5,121	5,069	20,828
의왕시	3,717	3,694	3,568	3,532	14,511
오산시	4,053	4,028	3,890	3,850	15,821
과천시	2,054	2,041	1,972	1,952	8,019
여주시	2,815	2,797	2,703	2,674	10,989
양평군	2,141	2,129	2,056	2,034	8,360
고양시	23,830	23,681	22,877	22,637	93,025
의정부	8,922	8,867	8,566	8,476	34,831
남양주	15,012	14,920	14,412	14,262	58,606
파주시	9,232	9,175	8,863	8,770	36,040
구리시	4,534	4,505	4,352	4,306	17,697
포천시	3,318	3,297	3,186	3,152	12,953
양주시	2,524	2,508	2,424	2,399	9,855
동두천	2,620	2,604	2,516	2,489	10,229
가평군	1,640	1,630	1,575	1,558	6,403
연천군	1,506	1,496	1,446	1,430	5,878
계	286,675	284,888	275,201	272,326	1,119,090

〈표 4-2〉 청년배당의 시군별 부가가치 유발효과

(단위 : 백만원)

시군	연도별 부가가치 유발효과				
	2019	2020	2021	2022	계
수원시	13,789	13,704	13,240	13,099	53,832
성남시	10,262	10,198	9,851	9,749	40,060
부천시	9,921	9,860	9,524	9,425	38,730
안양시	6,990	6,948	6,711	6,641	27,290
안산시	9,133	9,069	8,760	8,669	35,631
용인시	10,332	10,267	9,918	9,815	40,332
평택시	5,358	5,325	5,144	5,090	20,917
광명시	3,253	3,233	3,122	3,090	12,698
시흥시	4,912	4,882	4,716	4,667	19,177
군포시	3,004	2,985	2,884	2,853	11,726
화성시	5,801	5,765	5,568	5,511	22,645
이천시	2,182	2,169	2,095	2,073	8,519
김포시	3,366	3,345	3,231	3,198	13,140
광주시	1,703	1,693	1,635	1,618	6,649
안성시	1,800	1,789	1,727	1,710	7,026
하남시	2,279	2,266	2,188	2,165	8,898
의왕시	1,781	1,770	1,710	1,693	6,954
오산시	1,973	1,961	1,894	1,874	7,702
과천시	1,124	1,117	1,079	1,068	4,388
여주시	1,342	1,334	1,289	1,275	5,240
양평군	1,070	1,064	1,028	1,017	4,179
고양시	11,569	11,497	11,107	10,990	45,163
의정부	4,523	4,495	4,342	4,296	17,656
남양주	6,806	6,764	6,533	6,466	26,569
파주시	4,144	4,118	3,979	3,937	16,178
구리시	2,228	2,213	2,138	2,116	8,695
포천시	1,469	1,460	1,411	1,396	5,736
양주시	1,122	1,115	1,078	1,066	4,381
동두천	1,233	1,225	1,184	1,172	4,814
가평군	792	787	761	752	3,092
연천군	735	730	706	698	2,869
계	135,996	135,148	130,553	129,189	530,886

〈표 4-3〉 청년배당의 시군별 취업유발효과

(단위 : 명)

시군	취업유발효과				
	2019	2020	2021	2022	계
수원시	179	178	172	170	699
성남시	123	121	118	117	479
부천시	124	124	118	117	483
안양시	84	82	71	81	318
안산시	113	113	111	107	444
용인시	128	125	123	120	496
평택시	66	65	65	64	260
광명시	40	39	40	39	158
시흥시	59	58	56	56	229
군포시	39	38	37	37	151
화성시	69	68	66	65	268
이천시	29	28	27	27	111
김포시	40	40	39	38	157
광주시	20	20	19	19	78
안성시	23	22	22	21	88
하남시	26	25	25	24	100
의왕시	21	21	20	20	82
오산시	27	27	26	25	105
과천시	14	14	14	14	56
여주시	17	17	17	16	67
양평군	14	14	14	13	55
고양시	147	146	141	139	573
의정부	57	57	55	54	223
남양주	83	83	80	79	325
파주시	50	49	48	47	194
구리시	28	28	27	26	109
포천시	18	18	17	17	70
양주시	13	13	13	13	52
동두천	16	15	15	15	61
가평군	11	11	10	10	42
연천군	9	9	9	9	36
계	1,687	1,668	1,615	1,599	6,569

2. 경기도 산모건강지원 사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 경기도 산모건강지원 사업의 경우 31개 시군의 생산유발효과는 1,819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918억원, 그리고 취업유발효과는 1,292명으로 추정됨
- 산모건강지원사업 또한 해당 시군의 인구구조에 의해 결정되고 출생아가 많은 시군의 경우 산모건강지원사업의 배당이 크게 나타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남
- 시군별로는 수원시가 생산유발효과 및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출산연령인구가 작은 과천시와 가평군, 연천군의 경우 산모건강지원에 따른 파급효과가 작게 나타남
- 산모건강지원사업의 경우도 농촌 지역보다는 출산인구가 많은 도시 지역에 더 많이 예산이 배정될 수밖에 없고, 도시규모가 클수록 산모건강지원사업의 수혜가 크게 돌아가고 있음

〈표 4-4〉 산모건강지원사업의 시군별 파급효과(2019~2022)

(단위 : 억원, 명)

시군	파급효과(2019~2022)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명)
수원시	171	87	123
성남시	120	61	86
부천시	104	53	70
안양시	73	37	52
안산시	82	41	58
용인시	151	77	107
평택시	74	37	52
광명시	43	22	30
시흥시	60	30	42
군포시	39	20	28
화성시	141	71	99
이천시	34	17	33
김포시	73	37	51
광주시	56	28	39
안성시	26	13	18
하남시	43	22	30
의왕시	22	11	15
오산시	39	20	28
과천시	4	2	3
여주시	13	6	9
양평군	13	6	9
고양시	129	65	92
의정부	51	26	37
남양주	95	48	67
파주시	69	35	48
구리시	26	13	18
포천시	17	9	12
양주시	30	15	21
동두천	13	5	9
가평군	4	2	3
연천군	4	2	3
계	1,819	918	1,292

3. 지역화폐 도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종합)

- 경기도 지역화폐로서 청년배당과 산모건강지원 사업에 의한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 결과 생산유발효과는 총 1조 3,010억원으로 추산되며 부가가치유발효과는 6,227억원 그리고 취업유발효과는 7,861명으로 추정됨
- 시군별로는 수원시에서 1,211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625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822명의 취업유발효과가 기대되어 시군별 파급효과에서 가장 큰 파급효과 수치를 보여줌
- 다음은 고양시로서 1,059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517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그리고 665명의 취업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 용인시의 경우 988억원의 생산유발효과, 480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그리고 603명의 취업유발효과가 기대됨
- 성남시의 경우 929억원의 생산유발효과, 462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그리고 565명의 취업유발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 부천시의 경우도 923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440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그리고 553명의 취업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 농촌지역인 양평군은 97억원의 생산유발효과 48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64명의 취업유발효과가 전망됨
- 또한, 가평군은 68억원의 생산유발효과, 33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45명의 취업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 연천군의 경우 63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31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그리고 39명의 취업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표 4-5〉 지역화폐도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종합)

(단위 : 억원, 명)

시군	지역경제파급효과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수원시	1,211	625	822
성남시	929	462	565
부천시	923	440	553
안양시	632	310	370
안산시	856	397	502
용인시	988	480	603
평택시	541	246	312
광명시	307	149	188
시흥시	502	222	271
군포시	290	137	179
화성시	641	297	367
이천시	218	102	144
김포시	370	168	208
광주시	210	94	117
안성시	180	83	106
하남시	251	111	130
의왕시	167	81	97
오산시	197	97	133
과천시	84	46	59
여주시	123	58	76
양평군	97	48	64
고양시	1,059	517	665
의정부	399	203	260
남양주	681	314	392
파주시	429	197	242
구리시	203	100	127
포천시	147	66	82
양주시	129	59	73
동두천	115	53	70
가평군	68	33	45
연천군	63	31	39
계	13,010	6,227	7,861

제 5 장

요약 및 결론

1. 연구결과 요약
2. 결론

요약 및 결론

1. 연구결과 요약

- 경기도 지역화폐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활성화, 소상공인의 소득향상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경기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경기도는 경기도 거주 만24세 청년에게 청년배당을 지급할 계획이며 규모는 1인당 연 100만원(분기별 25만원)이며, 지급형태는 시(군)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할 예정임
- 경기도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청년배당을 실시할 계획이며, 따라서 청년배당의 시군 배정에 의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이러한 예산이 전부 소진되는 것을 전제로 파급효과를 판단함
- 청년배당이 지역화폐로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소득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일 고려, 해당 시군의 서비스업 부문의 최종수요로 판단하여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함
 - 즉, 지역화폐 가맹점의 경우 서비스업 부문일 가능성이 크고, 해당시군에 대한 인구 기준의 배당액과 서비스 업종별 종사자수 비중을 고려하여 청년배당액을 추정함
- 또한,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건강지원 사업으로 '지역화폐'를 지급할 계획이며 신생아 출생일 기준 1년 이상 경기도 거주한 경우가 해당됨
 - 출생아 1인당 500,000원 지역화폐 지원
 - 지원규모 : 84,600명(90%목표)(도비 50%, 시군비 50%)
 - 지원내용 : 모유수유 용품 구입, 산모·신생아 용품 구입, 산후조리비용
- 연도별로 2019년 423억원, 2020년 423억원, 2021년 423억원, 2022년 423억원을 지원
- 산모건강관리비 지원은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부문의 최종수요로 판단하여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함
- 청년배당에 의한 경기도 31개 시군의 총 생산유발효과는 1조 1,191억원이 발생할 전

망이며 연도별로는 2019년 2,867억원, 2020년 2,849억원, 2021년 2,752억원, 그리고 2020년 2,723억원이 발생할 전망이다

- 청년배당에 의한 부가가치 유발효과의 경우 31개 시군에서 총 5,309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며, 생산유발효과가 큰 도시지역에서 부가가치유발효과가 크게 나타남
- 청년배당에 의한 취업유발효과의 경우 31개 시군에서 총 6,569명의 취업유발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며,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지역에서 취업유발효과가 크게 나타날 전망

- 경기도 산모건강지원 사업의 경우 31개 시군의 생산유발효과는 1,819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918억원, 그리고 취업유발효과는 1,292명으로 추정됨
- 경기도 지역화폐로서 청년배당과 산모건강지원비에 의한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결과 생산유발효과는 총 1조 3,010억원으로 추산되며 부가가치유발효과는 6,227억원, 그리고 취업유발효과는 7,861명으로 추정됨

2. 결론

-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청년배당과 산모건강비 지원사업은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 서비스 업종별로는 시군별 차이가 있으나 주로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교육서비스업,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 부문에서의 파급효과가 타 부문보다 크게 나타날 것으로 분석되었음
- 인구구조와 지역의 산업구조에 의해 상대적으로 인구규모가 큰 도시지역에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크게 나타나며, 인구규모가 작은 농촌지역, 즉, 연천, 양평, 가평, 과천 지역의 경우 청년배당과 산모건강지원 배당이 작고 이에 따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작게 나타남
- 그렇지만, 시군별로 직접적으로 배당이 지불되면서, 지역경제파급효과는 외부유출없이 지역 내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측됨
- 따라서 인구규모가 큰 지역에 혜택이 크고, 규모가 작은 낙후 지역에서 혜택이 한정

된 문제로서 빈익빈 부익부 문제를 보정 또는 해결하는 방안을 향후 마련해야할 것임

- 또한, 청년배당과 산모건강비 지원 등 사업이 구체적으로 시행 완료되는 첫 번째 연도인 2019년 이후에 보다 정밀한 자료를 근거로 최종수요를 판단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지역화폐 관련, 지역내 가맹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파급효과를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더욱이 시군과 경기도 예산의 매칭결과에 따라 파급효과 분석은 달라질 수 있음
- 또한, 산업연관분석표를 근거로 한 분석은 승수분석 효과로서 분석에 한계가 있으며, 정량적인 분석 외에 지역공동체 형성 및 복지전달체계 개선 등 정성적인 비경제적 효과분석도 본격적인 사업추진 이후에 추진될 필요가 있음
 - 향후, 사업추진이 진행될 경우 각 시군별 가맹점 및 지역화폐 사용자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설문조사 등으로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개선하는 정책수단 동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분석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지역화폐 사업의 추진에 따른 지역경제파급효과를 시군단위별로 구체적으로 추산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임



참고문헌

- 김민정(2012). “기획: 민주주의의 새로운 흐름들; 지역화폐운동의 성과와 한계-한국사례를 중심으로”, 『기억과 전망』, 26: 116-148.
- 경기통계(각년도). 『경기도사업체조사』.
- 경기통계(각년도). 『시군별 인구』.
- 경기통계(각년도). 『시군별 연령별 인구』.
- 문진수(2015). “은평구 지역화폐 유통방안 연구”, 『서울 은평구청 세미나 자료집』, 사회혁신공간 데어.
- 류기환(2015).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국제지역연구』, 19 (1): 103-126.
- 류동민·최한주(2003). “지역통화운동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한발레츠의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발전연구』, 9: 85-106.
- 손애성(2017). “성남시 청년배당정책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아세아연구』, 60 (1): 52-102.
- 이상훈·김지나(2014). 『경기도 산업구조 전망』, 경기 : 경기연구원
- 이한주·김병조(2017).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도입에 관한 연구: 기초연구를 중심으로』. 서울: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전대욱(2016). “지역화폐의 도입에 따른 지역순환경제 구축의 동태적 효과”,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학회』, Vol. 2016.
- 조재욱(2013). “새로운 화폐정치 공간 만들기: 지역화폐제 도입을 통한 보완경제의 가능성 시탐”, 『비교민주주의연구』, 9 (1): 37-68.
- 지방행정연구원(2017). 『고향사랑 상품권의 경제적 효과분석 및 제도화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최준규·전대욱·윤소은(2016). 『경기도 지역화폐 활용방안 연구』, 경기 : 경기연구원.
- 한국은행(2007). 『산업연관분석해설』.
- 한국은행(2010·2014). 『산업연관표』.
- 한성일(2013). “지역화폐 운동과 지역경제.” 『지역사회연구』, 21 (4): 191-217.
- Barry, John and John LR Proops(2000). “Citizenship, Sustainability and Environmental Research: Q Methodology and Local Exchange Trading Systems”, Edward Elgar Publishing.

-
- Blanc, Jérôme(2011). "Classifying CCs: Community, Complementary and Local Currencies' Types and Generations".
- Briceno, Tania and Sigrid Stagl(2006). "The Role of Social Processes for Sustainable Consumption", *Journal of Cleaner Production*, 14 (17): 1541-1551.
- Cahn, Edgar S(2000). *No More Throw-Away People: The Co-Production Imperative* Edgar Cahn. New York.
- Collom, Ed(2008). "Engagement of the Elderly in Time Banking: The Potential for Social Capital Generation in an Aging Society", *Journal of Aging & Social Policy*, 20 (4): 414-436.
- Costanza, Robert, J. Farley, G. Flomenhoft, J. Blake, D. Chappelle, M. Chiota, K. Cornelius, A. Dubin, B. Eisel, and M. Gilmartin(2003). "Complementary Currencies as a Method to Improve Local Sustainable Economic Welfare", *Ecological Economics*.
- Douthwaite, Richard(1996). *Short Circuit: Strengthening Local Economies for Security in an Uncertain World*. Totnes, Devon: Green Books.
- Fitzpatrick, Tony and Michael Cahill(2002). "Environment and Welfare: Towards a Green Social Policy Palgrave Macmillan".
- Fitzpatrick, Tony and Caron Caldwell(2001). "Towards a Theory of Ecosocial Welfare: Radical Reformism and Local Exchanges and Trading Systems (LETS)", *Environmental Politics* 10 (2): 43-67.
- Groppa, Octavio(2013). "Complementary Currency and its Impact on the Economy", *International Journal of Community Currency Research* 17 (1): 45-57.
- Hironori Tarumi(2000). "Local Currency Movement and Civil Society", *한국행정학회*, 2000/9.
- Holdsworth, M. and D. Boyle(2004). "Carrots Not Sticks: The Possibilities of a Sustainability Reward Card for the UK", *New Economics Foundation and National Consumer Council*, London.
- Kang, Joonmo and Baeg Eui Hong(2015). "Community Currency in Korea: How do we Envision Community Currency?", *International Journal of Community Currency Research* 19 (D): 72-80.
- Lietaer, Bernard and Gwendolyn Hallsmith(2006). "Community Currency Guide", *Global Community Initiatives*: 1-32.

-
- Martignoni, Jens(2012). “A New Approach to a Typology of Complementary Currencies”, *International Journal of Community Currency Research* 16 (A): 1-17.
- Nakazato, Hiromi and Takeshi Hiramoto(2012). “An Empirical Study of the Social Effects of Community Currencies”, *International Journal of Community Currency Research* 16 (D): 124-135.
- North, Peter and Local Economy Policy Unit(2000). “Complementary Currencies and Community Economic Development in International Perspective: Problems and how they might be Overcome”.
- Pfajfar, Damjan, Giovanni Sgro, and W. B. Wagner(2012). “Are Alternative Currencies a Substitute Or a Complement to Fiat Money? Evidence from Cross-Country Data”, *International Journal of Community Currency Research* 16 (D): 45-56.
- Ryan-Collins, Josh, Luce Stephens, and Anna Coote(2008). “The New Wealth of Time: How Timebanking Helps People Build Better Public Services NEF”.
- Seyfang, Gill(2001). “Community Currencies: Small Change for a Green Economy”, *Environment and Planning A* 33 (6): 975-996.
- (2004). “Working Outside the Box: Community Currencies, Time Banks and Social Inclusion”, *Journal of Social Policy* 33 (1): 49-71.
- Seyfang, Gill and Noel Longhurst(2012). “Money, Money, Money? A Scoping Study of Grassroots Complementary Currencies for Sustainability”, *Science, Society and Sustainability (3S) Research Group*.
- Seyfang, Gill and Adrian Smith(2007). “Grassroots Innovation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owards a New Research and Policy Agenda”, *Environmental Politics* 16 (4): 584-603.
- Seyfang, Gill and Karen Smith(2002). “The Time of our Lives: Using Time Banking for Neighbourhood Renewal and Community Capacity Building”.
- Stodder, James and Bernard Lietaer(2016). “The Macro-Stability of Swiss WIR-Bank Credits: Balance, Velocity, and Leverage”, *Comparative Economic Studies* 58 (4): 570-605.
- Williams, Colin C., Theresa Aldridge, Roger Lee, Andrew Leyshon, Nigel Thrift, and Jane Tooke(2001). “Bridges into Work? an Evaluation of Local Exchange and Trading Schemes (LETS)”, *Policy Studies* 22 (2): 119-132.

Zechmeister, Elizabeth(2006). “What’s Left and Who’s Right? A Q-Method Study of Individual and Contextual Influences on the Meaning of Ideological Labels”, *Political Behavior* 28 (2): 151-173.

법률 제15885호. 2018. 「사회보장기본법」.

법률 제14839호. 2017. 「지방자치법」.

법률 제15208호. 2018. 「청소년 기본법」.

법률 제14501호. 2017.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조례 제5966호. 2018.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제5969호. 2018.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조례 제5967호. 2018.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

헌법 제10호. 1988. 「대한민국헌법」.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지역화폐의 유통기반 조성과 이용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활성화, 소상공인의 소득향상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경기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화폐”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인 시·군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발행·매출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교부 또는 제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의 육성을 위하여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화폐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화폐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지역화폐의 발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화폐의 발행규모에 관한 사항
2. 지역화폐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지역화폐의 발행 및 이용 활성화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화폐 가맹점 확보에 관한 사항
5. 지역화폐 이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의 유통확대에 관한 사항
7. 지역화폐 이용대상 및 제한에 관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지역화폐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사업 및 지원) 도지사는 지역화폐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이를 추진하는 자에게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화폐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업
2.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업
3. 지역화폐 보급 및 이용에 관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4. 지역화폐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동 운영대행사의 선정·관리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역화폐의 이용 활성화 조치) 도지사는 지역화폐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 지급하는 각종 수당, 시상금, 맞춤형 복지비 및 인센티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및 신청)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를 발행·유통하는 경우에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1. 발행하려는 지역화폐의 총액
2. 보조받으려는 금액과 산출 근거
3. 지역화폐의 이용 확대를 위한 계획
4.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제9조(재정지원의 조건) ① 제8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시·군이 발행하는 지역화폐에는 「경기도 상징물 관리 조례」 별표 3에 따른 경기도 브랜드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등을 육성하기 위해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을 한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0조(지역화폐 운영의 평가) 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시·군의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결과 그 평가결과가 우수한 시·군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지역화폐센터) 도지사는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지역화폐센터를 두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1. 지역화폐의 발행 및 유통
2. 가맹점의 모집
3. 분쟁의 조정
4. 지역화폐의 이용 활성화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포상) 도지사는 지역화폐의 보급 및 활성화 지원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교부결정, 교부조건, 시·군 보조금의 기준보조율, 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의 점검, 실적보고, 정산검사 및 감독, 성과평가, 취소된 보조금의 반환 등 그 밖에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청년에게 청년배당을 지급하여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만19세 이상 만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년배당”이란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와 시·군이 협력하여 청년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인 시·군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발행·매출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교부 또는 제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배당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청년배당 지급을 추진하는 시·군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요를 조사하여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청년배당에 관한 기본계획을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청년배당 지급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에 관한 사항
3. 시·군과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배당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급대상) ① 청년배당의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청년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 지급 대상자를 한정할 수 있다.

제6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제4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시·군은 도지사가 정하는 금액을 분기별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② 청년배당은 지급대상자가 지급 신청을 완료한 다음 분기부터 매분기가 시작되는 월의 20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다른 날짜에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급신청) 청년배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군의 청년배당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① 제4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시·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배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시·군은 지체 없이 지급된 청년배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및 사후관리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평가) 도지사는 매년 대상자 만족도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한민국헌법

-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청소년기본법

-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제49조(청소년복지의 향상)** ① 국가는 청소년들의 의식·태도·생활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복지향상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생활 보장, 직업재활훈련, 청소년활동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사회적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수준에 부응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8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그 규모를 적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4. 6., 2007. 5. 17., 2009. 12. 29., 2011. 7. 14., 2017. 4. 18.>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불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 청년 미취업자 실태 조사,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업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이하 “대학등”이라 한다)는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직업 지도 및 직업현장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0. 9.]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로 건전한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후조리비”란 출산모와 신생아의 건강보호와 출산과 양육의 건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와 시·군이 협력하여 출산가정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지역화폐”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시·군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발행·매출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교부 또는 제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매년 산후조리비 지원 기본계획을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비 지원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에 관한 사항
3. 시·군 지원에 관한 사항
4. 시·군과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5. 홍보와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후조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4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산후조리비 지원을 실시하는 시·군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산후조리비의 지원대상자는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출생 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영아의 부모 또는 모로 한다.

제6조(지급방법) 제4조에 따라 산후조리비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받은 시·군은 출생아 1인당 지원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제7조(지원신청) 산후조리비를 지원 받으려는 자는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군의 산후조리비 신청 절차에 따라 해당 시·군에 신청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지원금 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제8조(환수조치) 제4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시·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산후조리비를 지급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제9조(재정지원의 사후관리) 도지사는 재정지원을 받은 시·군에 대하여 지원금의 적정한 사용 여부 등을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Abstract

Economic Impact of Alternative Currency Systems in Gyeonggi Province :Focusing on Youth Dividen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regional economic effects on local currency projects, such as youth dividends and maternal health support projects currently being pushed by Gyeonggi Province. In Gyeonggi Province, the Act on the Payment of Youth Dividends, the Act on Support for Postpartum Preparation in Gyeonggi Province, and the Act on the Promotion of the Supply and Use of Local Currency in Gyeonggi-do were enacted, and it was necessary to determine the regional economic effects of the introduction of local currency.

Total production inducement effect of 31 cities and counties in Gyeonggi Province by youth dividend is expected to be 1.19 trillion won, and 286.7 billion won by 2019; 284.9 billion won by 2020; 272.3 billion won by 2022. The effect of inducing value added by youth dividend totals 530.9 billion won and the effect of inducing employment is 6,569 people. The production inducement effect of 31 cities and counties from the maternal health support program is estimated to be 181.9 billion won. The value added effect is about 91.8 billion won and the employment inducement effect is estimated to be 1,292 people. In total, the regional economic impact analysis of youth dividend and maternity health support is estimated to be 1.31 trillion won for Gyeonggi province. The value added inducement effect is 622.7 billion won and the employment inducement effect is 7,861 people.

Youth dividend paid in local currency and maternity health support projects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 local economy and are expected to contribute greatly to the revitalization of the local economy. The limitation is that there are limited benefits in areas with small populations with low-income, thus, alternative solutions should be prepared to address the problem of balanced benefits.

In addition, the final demand needs to be determined based on more precise data after 2019, the first year when projects such as youth dividend and maternal health support are completed in detail, and the impact on the local economy needs to be analyzed more precisely.

There are limitations in analyzing the economic effects of local currency without its local merchants membership being confirmed. Moreover, the economic effects analysis may vary depending on the matching results of the city government's budget. Nevertheless, this study could be meaningful in that it specifically estimated the regional economic effects of the promotion of the local currency project by city and county unit.

Keyword local currency, economic effect, youth dividend, maternity health support